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10월 24일 (제368회)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18년 10월 24일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18. 10. 24.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및 그 연장선에 있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조기에 건설하여 충청권 공동발전과 세종시 등에서 주도하고 있는 KTX세종역 설치 재추진”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종시 관문역인 KTX 오송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 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함.
- 활동기간 : 구성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위 원 수 : 9명 이내로 한다
- 활동내용
 -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건설 지원
 - KTX오송역 활성화 및 접근성 향상 방안
 - KTX세종역 설치 저지를 위한 제반활동

2. 제안이유

-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추진은 수도권과 연결 되지 않고, 낮은 경제성으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임.
 - 따라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조속히 건설하여 강원·호남 간 끊어졌던 인적·물적·문화적 교류를 증가시킴은 물론 남·북 평화의 축으로 발전시켜 유라시아로 가는 꿈의 실크레인으로 건설하고자 함.
- 그동안 KTX오송역은 2010년 11월 충청도민의 전폭적인 관심과 인근 충청권 주민들의 지지 속에 개통되어 이용률이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음.
 - 세종시가 7월 16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KTX세종역 설치 타당성” 재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를 가지면서 지난해 낮은 경제성으로 불발된 KTX 세종역 재추진을 본격화 하고 있음.
 - KTX세종역이 신설되면 충청권 갈등 및 막대한 예산낭비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건설 등 KTX오송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상기와 같이 KTX오송역 활성화 및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 상호촉개발을 조기 추진하여 실질적인 충청권 공조 발전 및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